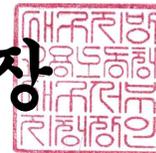


##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(자격취소)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. 4.

###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



- 건 명: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
- 근 거: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통지명	주요 통지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처분내용	자격직종 (고유번호)	처분사유		
김○운 (1988.11.26.)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통지	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취소	스포츠3급 (교사3급-제53769호)	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	폐문부재_ 수취인불명	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27

- 공고기간: 2024. 1. 4. ~ 2024. 1. 17.(14일간)
- 기타사항은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이선화(Tel. 053-605-65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